

2022년도 시행

**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
및 하위법령
개정내용[적용요령]**



행 정 안 전 부
지 방 세 정 책 관

목 차

I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

- 1. 전자송달 서비스 확대 근거 마련(법 §2) 1
- 2. 체류 관련 허가 범위에 대한 위임조항 명확화(법 §6) 3
- 3. 체납처분 유예 사유 추간 및 신청 근거 명확화(법 §17) 5
- 4. 타법 개정 등에 따른 조문정비(법 §6 등) 7

II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시행령

- 1. 결손처분 용어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(영 §3 등) 16
- 2. 체류 관련 허가 범위 명확화에 따른 조문정비(영 §5) 19
- 3. 체납자 명단공개 절차 명확화(영 §5조의5) 21

III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시행규칙

- 1. 지방행정제재부과징수금 관련 별지 서식 정비(규칙 별지 제1호의8 등) 26

지방행정재무과금법

1

전자송달 서비스 확대 근거 마련(법§2)

1 개정개요

개정 전	개정 후
☐ 전자송달 관련 규정 ☐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(위택스)에 의한 전자송달만 규정	☐ 전자송달 서비스 확대 근거 마련 ☐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추가하여 민간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전자송달도 송달로 인정될 수 있도록 규정

☐ 개정내용

- 전자송달 방법에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추가 규정하여 민간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송달 근거 마련

※ '19.11월부터 일부 세외수입에 대해서 전자송달 시범서비스 시행 중

< 전자송달 시범서비스 기관 >

◆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

- 위택스

◆ 민간정보통신망

- 은행 12개사(농협, 기업, 국민, 하나, 신한, 부산, 대구, 광주, 경남, 새마을금고, 전북, 케이뱅크), 금결원(인터넷지로)
- 카드사앱(삼성, 신한)
- 간편결제앱(카카오, 네이버, 페이코)

☐ 적용요령

- 민간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송달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시스템 구축 일정에 따라 전자송달로 종이고지서 송달 대체

2 개정조문

개정 전	개정 후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~ 13. (생략)	1. ~ 13. (현행과 같음)
14. “전자송달”이란 이 법 또는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관계법에 따라 <u>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</u> 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.	14. ----- 법이나 ----- ----- <u>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으로서 송달을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</u> ---.

2

체류 관련 허가의 범위에 대한 위임조항 명확화(법 §6)

1 개정개요

개정 전	개정 후
☐ 외국인 체납자 자료제공 ☐ 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’를 할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	☐ 체류 관련 허가의 범위 명확화 ☐ 명칭이 ‘허가’인 경우에만 자료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등 일선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류 관련 허가의 범위에 대한 위임 조항을 명확화

□ 개정내용

- 입법 취지 상 ‘체류 관련 허가’는 대한민국에 체류할 자격을 부여하는 각종 행정적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,
-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위임범위가 명칭이 ‘허가’인 것에만 국한된 것이라는 논란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 체류와 관련된 여러 행정적 조치를 포함할 수 있도록 ‘체류 관련 허가 등’으로 개선

□ 적용요령

- 외국인 체납자 자료제공 관련 규정을 명확화 한 것으로, 외국인 체납자 자료 제공 업무는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

2 개정조문

개정 전	개정 후
제6조(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) ① (생략)	제6조(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인 체납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<u>허가</u> 를 할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또는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.	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인 체납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<u>허가</u> 등을 할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또는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③ ~④ (생략)	③ ~④ (현행과 같음)

1 개정개요

개정 전	개정 후
☐ 체납처분 유예 ☐ 체납처분 유예 사유가 제한적 ☐ 체납자가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	☐ 체납처분 유예 사유 추가 ☐ 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에 체납처분 유예할 수 있도록 사유 추가 ☐ 체납처분 유예 신청 근거 명확화 ☐ 체납자의 신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

□ 개정내용

- 체납처분 유예 사유에 화재, 감염병,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를 추가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권 외 체납자의 신청으로도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

□ 적용요령

- 이 법 시행 후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

2 개정조문

개정 전	개정 후
제17조(채납처분 유예) ①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채납자가 <u>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채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</u> 그 채납액에 대하여 채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.	제17조(채납처분 유예) ① ----- -----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</u> 에는 채납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	1. <u>풍수해, 화재, 전쟁, 감염병,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</u>
	2. <u>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채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</u>
② ~ ③ (생략)	②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제1항에 따른 <u>유예의 신청·결정</u> 및 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④ (현행과 같음)
⑤ (생략)	⑤ (현행과 같음)

4

타법 개정 등에 따른 조문정비(법 §6 등)

1 개정개요

※ 지방세징수법 개정안 일치

개정 전	개정 후
	☐ 타법 개정 등에 따른 조문정비 ☐ 결손처분이라는 용어를 정리보류로 변경하는 등 지방세징수법의 결손처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, 일부 법 조문 체계를 정비함

☐ 개정내용

- 결손처분 유형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 시에는 “시효완성정리”로 처리하고 법률적 효과 없이 내부적으로 일정기간 체납액 징수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“정리보류”를 할 수 있도록 「지방세징수법」 개정

< 법률안 개정내용(「지방세징수법」 § 106) >

- ☐ 체납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결손처분 제도개선
 - 면책적 의미의 ‘결손처분’ 용어를 ‘정리보류’로 변경
 - ※ 국세의 경우, '97.1.1일부터 결손처분의 납부의무 소멸효과 폐지로 '13년에 결손처분을 법에서 삭제하고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(훈령)에 “정리보류” 규정 신설
 -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‘결손처분’은 ‘시효완성정리’로 변경

☐ 적용요령

- 타법 개정 등에 대한 조문 정비 사항으로, 관련 업무는 종전과 같이 운영

2 개정조문

개정 전	개정 후
제6조(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된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,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(이하 “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”라 한다)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. 다만, 체납된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과 관련하여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,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제6조(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제2조제6호의 ----- ----- ----- 정리보류자----- -- 정리보류액에 관한 자료----- ----- ----- -----,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(결손처분한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	1. ----- 정리보류한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-----

[illegible]

개정 전	개정 후
② ~ ⑦ (생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
제19조(채납처분절차 등에 관한 「국세징수법」 등의 준용) 지방 행정제재·부과징수금에 대한 채납처분절차 등에 <u>대하여는</u>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압류금지 재산에 <u>관하여는</u> 「국세징수법」 제32조, 제33조, <u>제3장제2절제2관</u> , 채납처분의 효력에 <u>관하여는</u> 같은 법 제26조, 제27조, 제3장제2절제3관, <u>제48조제2항 및 제3항</u> , 재산유형별 압류의 방법 등에 <u>관하여는</u> 같은 법 제40조, 제3장제2절제4관부터 <u>제7관까지</u> , <u>교부청구 및 참가압류의 절차 및 효력</u> 등에 <u>관하여는</u> 같은 법 <u>제3장제2절제9관</u> , 압류재산의 매각 및 청산 절차에 <u>관하여는</u> 같은 법 제3장제3절부터 <u>제5절까지</u> 을 준용하고, <u>결손처분에</u> <u>관하여는</u> 「지방세징수법」 제106조를 준용한다.	제19조(채납처분절차 등에 관한 「국세징수법」 등의 준용) ----- ----- <u>관하여</u> ----- ----- ----- <u>제3장제2절제2관을</u> ----- ----- ----- <u>제48조제2항 및 제3항을</u> ----- ----- ----- <u>제7관까지를- 교부청구와</u> ----- ----- <u>제3장제2절제9관을</u> ----- ----- ----- <u>제5절까지를</u> ----- <u>정리보류 등</u> ----- -----.
제9조의2(압류의 효력) ① 제9조에 따라 <u>부동산, 공장재단, 광업재단, 선박,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라</u>	제9조의2(압류의 효력) ① ----- --- <u>다음 각 호의 재산을</u> ----- -----

개정 전	개정 후
<u>등록된 자동차, 「건설기계관리법」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또는 「항공안전법」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를 압류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.</u>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<u><신 설></u>	1. 「<u>부동산등기법</u>」 등에 따라 <u>등기된 부동산</u>
<u><신 설></u>	2. 「<u>공장 및 광업재단 저장법</u>」 에 따라 등기된 <u>공장재단 및 광 업재단</u>
<u><신 설></u>	3. 「<u>선박등기법</u>」에 따라 등기된 <u>선박</u>
<u><신 설></u>	4. 「<u>자동차관리법</u>」에 따라 등 <u>록된 자동차</u>
<u><신 설></u>	5. 「<u>선박법</u>」에 따라 등록된 선 박(「<u>선박등기법</u>」에 따라 등기 된 선박은 제외한다)
<u><신 설></u>	6. 「<u>항공안전법</u>」에 따라 등록된

개정 전	개정 후
<신 설> ②·③ (생 략) 제11조의2(수색의 권한과 방법) ① (생 략) ② 징수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의 주거등을 수색할 수 있고, 해당 주거등의 폐쇄된 문·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. 1. (생 략) 2. 체납자의 재산을 <u>점유</u>하는 제3자가 재산의 <u>인도(引渡)</u>를 거부하는 경우 ③ ~ ⑥ (생 략)	<u>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</u> 7. 「건설기계관리법」에 따라 등록된 <u>건설기계</u> 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11조의2(수색의 권한과 방법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<u>점유·보관</u>----- ----- <u>인도(引渡)</u> 또는 <u>이전을</u> -- 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시행령

1

결손처분 용어변경에 따른 조문정비(영 §3 등)

1 개정개요

※ 지방세징수법 개정안 일치

개정 전	개정 후
	☐ 법 개정 등에 따른 조문정비 ☐ 결손처분이라는 용어를 정리보류로 변경하는 등 지방세징수법의 결손처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

☐ 개정내용

- 「지방세징수법」 개정에 따라 「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」 조문 정비

< 법률 개정내용 >

- ☐ 체납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결손처분 제도개선

- 면책적 의미의 ‘결손처분’ 용어를 ‘정리보류’로 변경

-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‘결손처분’은 ‘시효완성정리’로 변경

※ 「지방세징수법」 제106조 개정에 따라 「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」 조문 정비

☐ 적용요령

- 타법 개정 등에 대한 조문 정비 사항으로, 관련 업무는 종전과 같이 운영

2 개정조문

개정 전	개정 후
제3조(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) (생략)	제3조(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) (현행과 같음)
제4조(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 작성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의 체납 또는 결손 처분 자료(이하 “체납 또는 결손 처분 자료”라 한다)를 전산정보처 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 (자료보관장치나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매체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가 기록·보관된 것을 말한 다. 이하 같다)을 작성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 처분 자료파일의 정리·관리·보 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정한다.	제4조(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 작성 등) ① ----- ----- ----- 인적사항, 체납액 또는 정리보류액에 관한 자료(이 하 “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”라 한다)----- 체 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----- ----- -----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가 ----- -----. ②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- ----- ----- -----.
제5조(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요구 등)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요구 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“요구자” 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	제5조(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요구 등) ① ----- -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----- ----- ----- -----

개정 전	개정 후
게 <u>제출하여야</u> 한다. 1. · 2. (생략) ② 제1항에 따라 <u>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</u>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자료를 <u>제4조제1항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</u> 또는 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.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한 <u>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</u>가 체납액의 <u>납부, 결손처분의 취소</u>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공 대상 자료에 해당하지 <u>아니하게</u>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<u>통지하여야</u> 한다.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<u>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</u>의 요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.	-- <u>제출해야</u> -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를</u> ----- ----- <u>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</u> ----- -----. ③ ----- ----- <u>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</u>----- <u>납부,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</u> ----- <u>않게</u> ----- ----- <u>통지</u>해야 -----. ④ ----- ----- <u>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</u>----- -----.

2

체류 관련 허가 범위 명확화에 따른 조문정비(영 §5)

1 개정개요

※ 지방세징수법 개정안 일치

개정 전	개정 후
☐ 외국인 체납자 자료제공 ☐ 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’를 할 경우 체납자의 인적 사항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	☐ 체류 관련 허가의 범위 명확화 ☐ 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’으로 허가의 범위에 대한 위임 조항을 명확화

□ 개정내용

- 체류 관련 허가 범위 명확화를 위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도 “체류 관련 허가”를 “체류 관련 허가 등”으로 정비

〈 법률안 개정내용(「지방행정체제부과금법」 §6②) 〉

- ☐ 체류 관련 허가의 범위에 대한 위임조항 명확화
 -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위임범위가 명칭이 ‘허가’인 경우에 국한된다는 논란이나 민원 발생 우려
 - 논란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 체류와 관련된 여러 행정적 조치를 포함할 수 있도록 ‘체류 관련 허가 등’으로 개선

□ 적용요령

-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사항으로, 외국인 체납자 자료 제공 업무는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

2 개정조문

개정 전	개정 후
제5조(외국인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 등) ①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</u> 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1. ~ 7. (생략) ② ~ ④ (생략)	제5조(외국인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 등) ① ----- ----- “ <u>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</u> ”이란 ----- -----. 1. ~ 7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3

체납자 명단공개 절차 명확화(영 § 5의5)

1 개정개요

개정 전	개정 후
☐ 명단공개 대상제 제외 규정 ☐ 체납액의 50% 이상 납부한 경우 명단공개대상에서 제외	☐ 명단공개 대상제 제외 규정 ☐ “체납액”을 명단공개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 기준 체납액으로 명확화

□ 개정내용

-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·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중으로,
- 체납액의 50% 이상을 납부하여 명단공개대상 제외 시 그 체납액을 명단공개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토록 명확화

□ 적용요령

-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 것으로 명단공개는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

〈예시〉

- '21.1.1. 기준 5천만원 체납자가 '21.5.31. 3천만원을 납부한 경우 체납액의 50% 이상을 납부하여 '21년도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나,
 - '22.1.1. 기준 2천만원의 체납이 여전히 남아있어 50% 이상인 1천만원 이상을 납부해야 '22년도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함

2 개정조문

개정 전	개정 후
제5조의5(채납자 명단공개) ① 법 제7조의3제1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	제5조의5(채납자 명단공개) ① --- ----- ----- ----- ---.
1. <u>채납액(가산금을 포함한다)의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</u>	1. <u>채납액</u> ----- -----
2. 3. (생략)	2. 3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<u>법 제7조의3제1항의 지방행정 제재·부과금이 채납일부터 1년이 지났는지는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.</u>	③ <u>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채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결정한다.</u> 1. <u>법 제7조의3제1항 본문의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채납 기간</u> 2. <u>제1항제1호의 채납액</u>

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시행규칙

1

지방행정제재·부과징수금 관련 별지 서식 정비 (규칙 별지 제1호의8 서식 등)

1 개정개요

개정 전	개정 후
☐ 별지 서식 규정 ☐ 지방행정제재·부과징수금과 가산금만 구분하여 규정	☐ 별지 서식 정비 ☐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과 가산금 외에 체납처분비를 별도로 규정

☐ 개정내용

- “지방행정제재·부과징수금” 정의에 맞춰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, 가산금, 체납처분비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관련 서식 정비(총 8종)

※ 징수촉탁 인수서(별지 제1호의8), 압류통지서(별지 제2호),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(별지 제7호), 체납처분 유예 통지서(별지 제8호), 교부청구서(별지 제10호), 공매대행의뢰서(별지 제11호), 공매대행통지서(별지 제12호), 공매 통지서(별지 제13호)

☐ 적용요령

- ‘22. 1. 1.부터 개정된 서식 사용

2 개정조문

■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1호의8서식] <개정 2020. 3. 24.>

행정기관명

수신자
(경유)
제 목 징수촉탁 인수

다음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을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제2항에 따라 년 월 일자로 징수촉탁을 인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.

납 의 무 자	성 명 (법 인 명)	주민(법인, 외국인) 등 록 번 호			
	주 소 (영 업 소)				
징수축탁일 / 문서번호		년 월 일 / 제 호			
징 수 축 탁 명 세					
지방행정제재 • 부과금 종류 (항목)	부과연도	납부기한	지방행정제재 • 부과징수금		비 고
			계	지방행정제재 • 부과금 가산금	
체납처분비					
합계					

$$\frac{11}{E}.$$

발신명의 직인

기안자 (직위/직급) 서명
협조자

검토자 (직위/직급)서명

결재권자 (직위/직급)서명

처리과명-연도별일련번호(시행
일) 접수

처리과명-연도별일련번호(접수일)

우 도로명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번호()

팩스번호()

/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

/ 공개구분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²) 또는 중질지(80g/m²)]

압 류 통 지 서					
받는 사람	성명 (법인명)	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	
	주소 (영업소)				
체 납 자	성 명 (대표자)		주민등록번호 (법인·외국인등록번호)		
	상호명 (법인명)		사업자등록번호		
	주소 (영업소)				
압류재산의 표시(압류재산의 종류·수량 및 품질과 소재지를 적습니다)					
압류 연월일	년 월 일		조서 작성 연월일	년 월 일	
압류의 사유					
압류해제의 요건					
압류에 관계된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 내용					
과목	부과연도	납부기한	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제재·부과징수금		
			계	지방행정제재·부과금	가산금
체납처분비					
합계					
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압류했음을 통지합니다. 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					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접수번호		접수일	처리기간
납부의무자	성명(대표자)	주민등록번호(법인·외국인등록번호)	
	상호(법인명)	사업자등록번호	
	주소(영업소)		
	전화번호(휴대전화)	전자우편주소	

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지방행정제재·부과징수금	계		지방행정제재·부과 금	가산금	체납처분비
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사유					
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기간	년	월	일부터	년	월 일까지

위와 같이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합니다.

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

- 29 -

행정기관명

수신

제목 체납처분 유예의 통지

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귀하(귀 법인)가 년 월 일에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제재·부과징수금의 체납처분 유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음을 통지합니다.

결정된 체납처분 유예의 구분								
체납처분 유예가 결정된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제재·부과징수금	부과연도	기분	과목	부과번호	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제재·부과징수금			비고
					계	지방행정제재·부과금	가산금	
	체납처분비							
합계								
결정된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	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						
분할납부 금액		납부기한		납부장소		비고		
1회								
2회								
:								
체납처분 유예의 효력 발생일			년 월 일					

끝.

발신명의

직인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서명

결재권자 직위 (직급)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일자)

접수

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

우 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()

전송()

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

/ 공개구분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교 부 청 구 서					
문서번호				사건번호	
체 납 자	성명			주민등록번호	
	상호			사업자등록번호	
	주소(소재지)				
교부청구금액		금	원정		
교부청구에 관계된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 체납액의 내용					
부과코드	관리번호	법정기일	지 방 행 정 제 재 · 부 과 금		비고
과목명		납부기한	가산금	계	
체납처분비					
합계					
배 당 액 입 금 의 회 계 좌	개설은행			예·적금명칭	
	계좌번호				
	사용인감			예금명의인	
1.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「국세징수법」 제59조에 따라 위 금액의 교부를 청구합니다. 2. 「민사집행규칙」 제82조제2항에 따라 배당액을 입금할 예금계좌를 신고하오니 배당액이 발생하면 위의 계좌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.					
				년	월 일
		발 신 명 의		직인	
귀하					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행정기관명

수신자
(경유)

제 목 [] 구매 대행 의뢰
[] 수의계약

아래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하여 구매(수의계약)에 따른 매각을 의뢰합니다(근거: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「국세징수법 시행령」 제66조제1항·제74조).

체납자	성 명 (상 호)		생년월일 (사업자등록번호)	
	주 소 (사업장)			
매각재산의 표시				
압류일자		년 월 일		
매각에 관계된 체납액				
부과코드	발행번호	지방행정제재·부과금		비 고
과 목	납부기한	가산금	계	
체납처분비				
합계				

발 신 명 의 직인

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○○○과 담당자 ○○○(전화:)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서명

결재권자 직위 (직급)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일자)

접수

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

우 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()

전송()

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

/ 공개구분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행정기관명

수신자
(경유)

제 목 [] 공매 대행 통지
[] 수의계약

아래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(수의계약)에 따른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도록 했음을 알려드립니다(근거: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「국세징수법 시행령」 제66조제2항·제74조).

체납자	성 명 (상 호)		생년월일 (사업자등록번호)	
	주 소 (사업장)			
압류재산의 표시				
압류일자		년 월 일		
압류에 관계된 체납액				
부과코드	발행번호	지방행정제재·부과금		비 고
과 목	납부기한	가산금	계	
체납처분비				
합계				

발 신 명 의 직인

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○○○과 담당자 ○○○(전화:)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서명

결재권자 직위 (직급)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일자)

접수

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

우 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()

전송()

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

/ 공개구분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행정기관명

수신자

(경유)

제 목 공매통지

아래와 같이 공매할 것임을 통지합니다(근거: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「국세징수법」 제75조).

체납자	성명 (상호)			생년월일 (사업자등록번호)	
	주소 (사업장)				
공매재산의 표시					
공매공고일자		년 월 일			
공매 장소		공매 방법	일반경쟁입찰(기일입찰, 기간입찰)·경매		
배분요구의 종기일자					
회차	입찰일시(기간)		매각결정 기일	매각예정가격	
	입찰기간(입찰일)	개찰일자			
수의계약	제1회 공매 후 1년 간 5회 이상 공매해도 매각되지 않는 경우에는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「국세징수법」 제6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.				
채권신고 최고 및 배분요구 안내	1. 공매공고의 등기(등록) 전까지 등기되지 않은 채권자 및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전세권자는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해야만 합니다(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「국세징수법」 제76조제1항 및 제2항).				
	2. 배분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이 바뀌는 때에는 배분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합니다(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「국세징수법」 제76조제3항).				
	3. 공매공고의 등기(등록) 전까지 등기(등록)된 채권자가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공매집행 기록에 따라 채권액을 계산하며, 채권액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(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「국세징수법」 제76조제6항).				
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(단위: 원)					
부과코드	관리번호	지방행정제재·부과금			비고
과목명	납부기한	가산금	계		
		채납처분비			
		합계			

발신명의 직인

-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등이나 「국세징수법」 제105조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「국세징수법」 제88조에 따라 공매를 취소 또는 정지합니다.
- 이 통지서는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, 「국세징수법」 제76조제5항의 채권신고 최고, 같은 법 제76조제7항의 배분요구 안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 통지에 갈음합니다.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서명

결재권자 직위 (직급)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일자)

접수

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

우

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()

전송()

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

/ 공개구분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